임원선출에 관한 총회 운영 규정

제정 2006. 12. 15. (규정 제2호)

일부개정 2008. 10. 30. (규정 제4호)

일부개정 2015. 2. 13. (규정 제9호)

일부개정 2016. 1. 28. (규정 제13호)

일부개정 2020. 1. 6. (규정 제26호)

일부개정 2022. 2. 21. (규정 제51호)

일부개정 2025. 2. 14. (규정 제6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춘천문화원 정관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되는 춘천문화원 임원의 선임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원 선임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춘천문화원의 임원 중 정관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원장을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관 제13조 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지명으로 선임되는 임원의 경우

2. 정관 제24조, 제30조에 따라 총회에서 위임받아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경우

제3조(공정의무) 이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총회에서의 임원선임절차(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원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임원선거와 관련한 행정사무는 본원 사무국에 위임하여 집행토록 한다.

② 정관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종전 임원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신규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총회일로부터 4주 전에 임원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정관 제12조, 제13조 제3항에 따라 보궐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임원궐위상태 발생일로부터 4주 이내에 보궐임원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은 임원 또는 회원 중에서 5인 내지 7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위촉하고,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다. 단, 임원선거에 입후보하여 임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8.>

② 위원의 임기는 임원선임에 따른 법인등기를 완료하여 임원선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ㆍ처리한다.

1. 선거인 명부의 작성

2. 후보자등록사무

3. 선거운동과 계도에 관한 사항

4.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5. 당선인의 결정

6.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ㆍ기타의 심사ㆍ처분 및 규정의 유권해석

7. 선거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최종결정권 행사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의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케 한다.

제8조(회원의 선거권) 정관 제7조에 따라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인정한다. <개정 2025. 2. 14.>

제9조(회원의 피선거권) ① 정관 제7조에 따라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하여 임원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② 정관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인사로 이사에 선임된 이사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원장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20. 1. 6.>

제10조(선거공고) ① 정관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종전 임원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신규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원장이 총회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고, 이에 총회에서 임원선임안건을 상정할 것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정관 제12조, 제13조 제3항에 따라 임원의 궐위에 따른 보궐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궐위상태가 발생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원장이 보궐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고, 이에 총회에서 보궐임원선임안건을 상정할 것임을 포함하되, 총회일은 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총회소집 및 공고와 동시에 위원장은 임원선거를 공고한다.

④ 종전 임원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인한 총회소집일은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단, 총회소집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신설 2022. 2. 21.>

[전문개정 2016. 1. 28]

제11조(선거인명부) ① 위원장은 회원명단을 바탕으로 제10조의 선거공고일을 기준일로 하여 제8조의 선거권을 가지는 회원의 명부(이하 “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 작성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문화원 사무국장에게 선거인명부 작성에 필요한 일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항에 따라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총회일 7일 전까지 공고하고, 선거인명부 공고일로부터 3일간을 선거인명부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기간으로 부여하며, 이의신청기간이 만료일 익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공고한다.

제12조(후보자등록) ①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한 회원으로서 총회에서 임원(원장)에 선임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일로부터 소정 서류양식에 의거 2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시에 1,000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14.>

제13조(후보자 공고 및 투개표 장소)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회원의 명단을 총회일 7일 전까지 본 문화원 사무국 게시판에 공고한다.   
<개정 2016. 1. 28.>

제14조(투표방법) ① 임원(원장)선거 입후보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해 출석회원 1인이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관 제24조 제3항에 따라 불참회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8.>

② 전항에 따른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③ 임원선거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임원 선임의 승인여부만 결정한다.

제15조(투표절차)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본인 또는 적법한 의결권 행사의 권한이 있음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 관례에 따라 기표한다.

제16조(당선자 결정) 위원장은 개표완료 후 후보자별 득표현황을 발표하고 당선자가 확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제17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정관 제30조에 따른 이사회의결로 변경할 수 있으며,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부 칙 (2006.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